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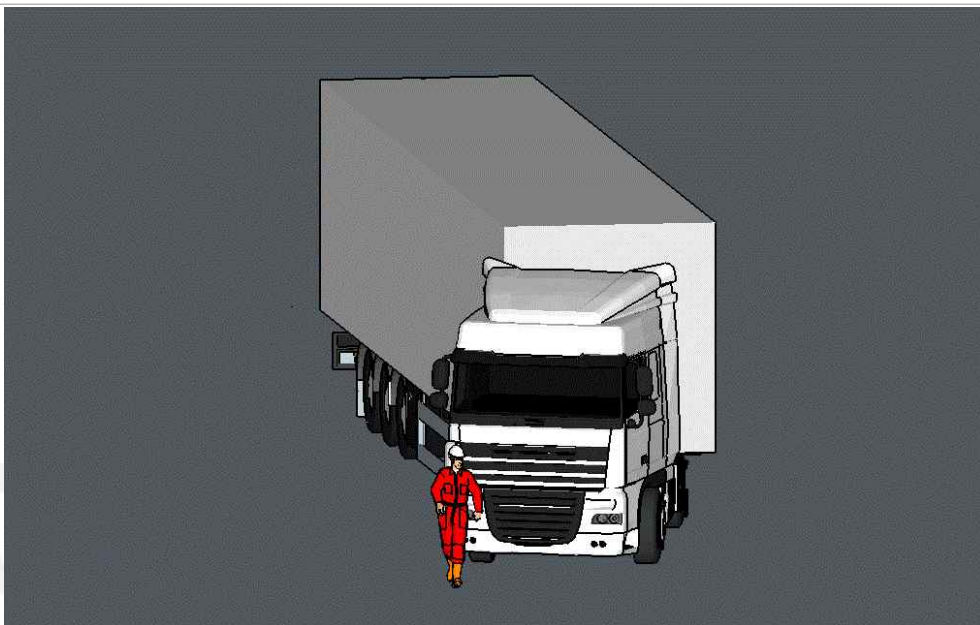
중대재해 사례(2019.02.08.) KOSHA-경기서부-SA-201905

본 속보는 경기서부지사 관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 사업장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. 금번 발생한 사고는 원인규명이 완료되지 않은 재해조사 진행 중인 사안으로 사법적 사항 등과는 무관하며, 사례전파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신속히 배부하오니 안전 교육 등에 참조하여 동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화물자동차(암롤덤프트럭)에 부딪힘

< 사고개요 >

2019년 7월 10일(수) 경기도 시흥시 소재 (주)○○○○에서 사업장 내에 출입하는 암롤 덤프트럭(25톤) 운전기사가 사업장 내에서 우회전하던 중 사업장 내에서 이동하는 재해자를 인지하지 못하고 부딪혀 사망한 재해임



사진

재해발생상황

1 사고발생과정

<기인물 : 암롤덤프트럭>



- 설 비 명 : 암롤 덤프트럭
- 차 종 : 대형화물
- 높 이 : 약 3,600mm
- 너 비 : 약 2,500mm
- 길 이 : 약 9,000mm
- 총 중 량 : 약 25,000kg
- 최대적재량 : 11,500kg

○ 재해발생 과정

- 사업장 출입구에서 들어온 화물자동차가 사업장 내 계근대로 향하기 위해 운전기사가 차량 우회전을 하던 중 조수석 쪽에서 차량을 등지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통행하는 재해자를 인지하지 못하고 부딪히는 재해가 발생함

2 사고발생원인(추정)

○ 근로자 통로 미설치

-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나, 근로자 안전통로 미설치

○ 근로자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접촉 미방지

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(화물자동차 등)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을 금지하거나
- 유도자를 배치하여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유도하여야 하나, 근로자 출입 금지 미조치 및 유도자 미배치

3 동종사고 예방대책

○ 근로자 통로설치

-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

○ 근로자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접촉의 방지

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(화물자동차 등)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금지

4 사업주 및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

○ 사업주가 해야 할 일

- 사업장 내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 설치
-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곳에 출입금지 조치 실시

○ 근로자가 해야 할 일

- 사업장 내 통행 시, 안전통로 사용
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 금지